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in Considering the Acceptanc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최응렬* · 송혜진** · 오세연***

<목 차>

I. 서론	IV.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
II. 민간군사기업의 개관 및 현황	V. 결론
III. 민간군사기업의 운용실태 및 쟁점	

<요 약>

세계 각국은 냉전 종식 이후 정규군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지만 국지적인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마다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 군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의 모든 기능을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관행에서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핵심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규제법규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 인력의 사망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또한 자본주의 원리에만 입각하여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간군사기업의 가능한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의 운영모델은 한반도의 국방환경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민간군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민간군사기업, 민군 군사협력, 군 아웃소싱, 군 인력, 민간경비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저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I. 서 론

세계 각국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정규군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도 세계 각국은 자원의 확보 등을 둘러싸고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평화유지를 위한 군 인력의 파견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 파견되는 상당수는 정규군이 아닌 민간군사기업의 직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현지에 파견되어 병참, 번역, 전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국제법적으로 이들을 규제하는 법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규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군사기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방개혁 2020안에 대규모 군 인력 감축이 예상되고 있고, 비 전투분야는 이미 아웃소싱을 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안보적 정책대안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퇴역한 군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고려해 볼 시기가 되었다. 이처럼 유동적인 탈냉전의 안보환경과 군의 구조조정은 국방의 모든 기능을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군의 핵심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걸프전 지원을 시작으로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어 1993년 소말리아, 1995년 앙골라 등지에 의료지원단과 공병부대를 파견하였고, 서부 사하라, 동티모르, 키르키즈스탄 등지에서 국제평화유지군으로서 활동하였다. 2005년 5월 기준으로 3,800여명이 PKO활동¹⁾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3,500여명의 대규모 부대가 파견되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해외파병에 대한 규정이 국방부 훈령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파병이 체계적인 군사용역업체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미국의 민간군사기업의 형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와 같은 납품절차를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체계적인 군사용역업체를 운용·관리하여 국익을 증대시키고 제대군인에 대한 재취업 향상과 관련된

1) UN PKO(평화유지활동)는 UN 안보리나 총회가 행하는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지역 분쟁과 사태에 대해서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분쟁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UN 회원국들이 UN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군인 및 민간인들을 파견하여 파견요원들의 정치적·군사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UN 주도의 분쟁 해결활동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하면서 분쟁 이후의 재건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익도 창출할 수 있어 PKO 참여는 국가적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21세기의 주요한 군사활동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영호, 2008: 82-83).

산업발전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UN평화유지군의 신속한 파병을 위해 상비부대 창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적 국방환경에 맞게 민간군사기업을 육성하여 두지 않으면 많은 비용과 주권의 훼손을 감수하면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환경과 국내에 축적된 군사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이성근, 2005b: 102).

현재 민간군사기업체의 자본 규모는 수십만 달러에서 20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오늘날 이미 시장 규모가 200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도 있다(문광진, 2002: 3). 날이 갈수록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PMC 소속 기업전사들은 병참이나 경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계약을 맺고 정규군에 '전쟁용역(service of war)'을 공급한다(피터 W. 싱어, 유강은 역, 2005: 44). 그렇다고 민간군사기업을 시장원리나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볼 수도 없다.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민간군사기업과 민간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들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군사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운용실태와 쟁점사항들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민간군사기업의 개관 및 현황

1. 민간군사기업체제의 개관

1) 개념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이란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로 교전, 전략 입안, 첩보 활동, 위험 평가, 작전 지원, 군사 훈련, 전문 기술 등의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데 주력하는 법인체이며, 광범위한 군사 분야나 안보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집단을 총칭한다.

민간군사기업체제는 용병²⁾ 제도에서부터 발전되어 왔으며, 이는 자국민의 보호 또는 부

2) 현대적인 용병집단은 세련된 법인기업으로 전투수행과 첩보수집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지원과 작전 지도 등 컨설턴트 업무, 무기조달의 중개 등 브로커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종합적인 전쟁·군사서비스산업이다(문광진, 2002: 2)

족한 병력의 보충을 위해서 고대로부터 사용해 오던 제도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현대적인 민간기업제도의 형태를 갖추고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김정현, 2004: 194). PMC는 하나의 산업이고, 군대 업무를 대신 맡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다.

2) 특징

군대업무를 대신 맡아 운영하는 민간군사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김광우, 2005: 205-206).

첫째, 민간군사기업은 군사 분야에 대한 재화와 용역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는 단순한 군수지원에서부터 군사교육·훈련제공, 전략·전술적 자문 및 지원, 요인경호, 시설경비, 전후처리, 지뢰제거, 비밀작전 그리고 전투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둘째, 민간군사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계층제와 분업이라는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차원의 용병과 일회성 지원으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는 일시적 계약 행위자들과는 구별된다.

셋째, 민간군사기업은 기업으로서 복잡한 재무적 활동을 하고 있다. 즉 그들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도 하고 법인으로서 입찰 참여 등 다양한 계약행위를 하며 대기업의 사회사로서 재정적 지원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넷째, 민간군사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인 경우도 있으며 활동 무대는 국제적인 경우가 많다. 최근 민간군사기업들은 기업합병(M&A) 등으로 다국적 대기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국제분쟁이 있고 군사적인 주문이 있는 곳이라면 이들 기업은 다양한 고객들을 위해 지역과 국가의 구분을 따지지 않고 계약을 수주하여 영리 추구에 매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민간군사기업은 전쟁과 관련한 분야로 시작된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군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훈련, 군수지원 분야 등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민간군사기업과 용병의 개념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용병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약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PMC는 현지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의 위험한 현장을 누비면서 다른 이를 위해 절제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PMC이다. 용병은 유엔의 인권규약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다. 용병기업은 보통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개입하지만, PMC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PMC는 유엔과 현지 정부와의 협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월간조선, 2007: 362, 368). 물론 현대의 용병의 개념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민간군사기업의 요원들을 현대적 용병집단이라 부르고 있다.

2. 민간군사기업의 분류 및 현황

1) 민간군사기업의 분류

Singer(피터 W. 싱어, 유강은 역, 2003: 92-95)는 민간군사기업을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군사지원기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1> 참조).

(1) 군사공급기업(Military Provider Firms)

고객에게 실제 전투행위를 비롯한 전술적 군사지원을 하는 군사력 제공기업으로 전선 부대나 야전 부대의 직접 지휘·통제부 등으로 실제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전장의 최전선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앙골라, 시에라리온,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활동한 Executive Outcomes, Sandline International, SCI, NFD 등이 이러한 민간 군사공급기업의 고전적인 예이다. 군사공급 기업의 기업과 거래하는 전형적인 고객은 대개 긴박한 위협 상황에 직면한 비교적 군사 역량이 부족한 곳들이어서 군사공급기업이 고객에게 독립적인 전술을 제공한다.

(2) 군사자문기업(Military Consultant Firms)

퇴역장교들로 하여금 군사작전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자문과 군사훈련을 담당하게 하는 군사자문기업으로 자문과 훈련 용역을 제공한다. 이 기업들은 전략, 작전, 조직과 관련된 분석을 제공하는데 사업가들이 이른바 ‘고객과의 접촉’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수준의 계약을 고객과 맺는다. 이들의 존재가 전략적·전술적 환경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음에도 전장에서 최종적인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바로 고객이고, 이것이 군사공급기업들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이 부문에 속하는 기업들로는 Levdan, Vinnel, MPRI 등을 들 수 있다.

(3) 군사지원기업(Military Support Firm)

군부대에 병참·정보·시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 병력을 늘리거나 예비역을 소집하는 등의 업무로 국가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군사지원기업을 말한다. 이 기업들은 고객의 전반적인 핵심임무의 일부가 아닌 부차적인 업무를 전문화하고, 고객의 군대가 유지할 수 없는 효율성을 구축할 수 있다.

<표 1> 민간군사기업 분류 및 서비스 사용자

구분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군사지원기업
활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장에서 전투행위 및 야전 부대 지휘·통제 등 교전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전술적 자문 •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 전장에서 활동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 보급, 수송, 정보, 기술지원 등 비살상 지원 및 조력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 및 작전지원(Combat and Operational Support) • 제3국의 고객 겨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자문 및 훈련 (Military Advice and Training) • 교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고객들이 전투의 모든 책임 전담 • 제3국의 고객 겨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조달(Arms Procurement) • 정보수집(Intelligence gathering) • 보안 및 범죄방지(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Service) • 군수지원(Logistics Support) • 활동영역과 수입 최대 • 활동분야가 다양함 • 그 기업이 속한 국가도 주요 고객
주요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Governments) • 긴박한 위협상황에 직면한 비교적 군사역량이 부족한 곳 • 앙골라, 시에라리온,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Governments) • 군대 재건에 몰두하고 있거나 사역량을 확대하는 경우 •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 -계약조건이 더 장기적이고 수익성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Governments) • 다국적 기업들(Multi-National Companies) • 인권단체(Humanitarian Agencies) • 평화유지조직(Peacekeeping organizations) • 새로운 군사적 위협에 직면, 짧은 기간 내에 시급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상비군이나 조직 • 선진국 등 다양
대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ecutive Outcomes • Gurkha Security Guards • Sandline International • SCI • NF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DM • DSL • DynCorp • Levdan • MPRI • Silver Shadow • Vinnel • 정당성과 이윤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샌드라인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자문기업으로 변신 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in Security • Controll Risk Group • DSL • DynCorp • Executive Outcomes • Gray Security • Group 4 • Gurkha Security Guards • Kellog Brown & Root (건설, 군수지원) • Kroll • Levdan • Lifeguard • Pacific Architects and Engineers(PAE) • SAIC 등 • Saladin • Sandline International • 론코(지뢰 제거)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상 가장 '가상적인' 경향이 있고 군사고문역할만 한다고 주장 • 부정적인 대중의 관심에 의해 사업손해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점점 줄어들 • 추가계약의 필요성을 강요당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도급업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오해 •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전투 위협에 노출

자료: 우제웅 외, 2006: 40; The Stationery Office, 2002 재구성

2) 민간군사기업의 현황

많은 서방국가들이 분쟁지역의 외교인력 보호와 군 작전 지원, 군사고문단 지원 역할을 PMC에게 맡기고 있다. 고객은 군대뿐만이 아니다.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 분쟁지역을 취재하는 언론인, 분쟁지역을 방문하는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 관료들과 NGO 단체 등이 고객이고, PMC의 주 고객은 다국적 기업이다(월간조선, 2007: 251-252).

특히, PMC의 활용은 무기와 같은 하드웨어의 구매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의 무기구매에 의해 군사무기를 공급하는 기존의 무기제조업체와는 달리 PMC는 군복무를 수행할 민간 군사인력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다시 말해 PMC를 활용한다는 것은 국가의 방위서비스 자체를 민간기업에 의해 대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이장욱, 2007: 312).

전 세계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의 숫자와 국적은 정확하지 않으며 그것을 파악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민간군사기업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www. PrivateMilitary.org)에는 2005년 10월 현재 약 50여개의 민간군사기업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인 40여 개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 11개, 이스라엘과 프랑스 각각 2개 그리고 싱가포르와 홍콩에 각 1개씩의 민간군사기업 본사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민간군사기업의 약 70~80% 정도가 미국기업이며, 약 10% 정도가 영국 기업이고, 나머지는 미국과 영국 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는 약 500여개의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민간군사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미 국방부는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간 미국 소재 민간군사기업과 약 3,000건의 계약(계약총액 약 3,000억불 상당)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국내 약 200여개 대학에 있는 학생군사교육단(ROTC) 프로그램을 이미 민간군사기업에 위탁한 바 있다(김광우, 2005: 208).

최근 이라크는 민간군사기업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1991년 걸프전 당시 민간계약자 대비 현역 미군의 비율은 1:50이었으나 2003년 이라크 전에서는 1:10으로 미군 현역의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민간계약자들의 수는 증가하였다(Holmqvist, 2005: 24). 현재 이라크에만 2만 여명의 민간군사기업 요원들이 취사, 트럭 운전, 세탁, 청소 등 단순노동에서부터 전투차량과 항공기 정비, 기지 건설, 컴퓨터와 인터넷 설치, 요인 경호와 유전시설 경비 등의 보안업무, 통역, 포로 심문 등을 포함하여 신병훈련과 경찰관 양성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이 호황을 이루는 것은 '군 효율화' 때문으로 군 능력은 향상시키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투 이외의 부분을 적극 아웃소싱하는 추세이다.

2005년 12월 5일 존스홉킨스대 나이트(Paul H. Nitze) 국제학 대학원에서 럼스펠드(Donald Henry Rumsfeld)는 '이라크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실시하면서 "군

관련자들이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임무 및 기타 정부 관련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들을 위해 외부 관련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이미 다수의 외부 관련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모두 통일되게 군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외국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행동도 통제되어야 하며, 미 법무부가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원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 이라크 법, 그리고 미 정부의 법체계는 이라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관련된 대인의 신상과 임무와 관련하여 통제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일부 사항을 외부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계획이 민간업자를 고용한 미 정부 혹은 기타 해당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판단합니다. 본인은 민간업자들을 활용하지 않는 의사에는 반대합니다.”라고 대답하여 미국의 민간군사기업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www.blog.com>; 한성욱, 2007: 61-62 재인용).

Ⅲ. 민간군사기업의 운용실태 및 쟁점

1. 민간군사기업의 운용실태

1)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제도 운용실태

전 세계적으로 민간군사기업제도를 활용하여 해외 파견군을 지원하거나, 자국 내에서 군사적 영역의 후방지원이나 보조적인 서비스 등 기능적인 소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며 안보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숫자도 은밀성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약 5백 여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정현, 2004: 195). <표 2>에는 현재 대표적인 민간군사기업은 MPRI, KBR, DynCorp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활동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지역별 활동실태 종합

지역별	주요 대상국가	관련 기업	목 적	비 고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골라 • 수단 • 에티오피아 • 라이베리아 • 모잠비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O • IDAS • Airscan • 마인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참여 • 정보제공 • 군수지원 • 지뢰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전에 관여하는 기업이 대부분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로아티아 • 보스니아 • 영국 •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RI • 아이리스 • Sand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훈련 • 장비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은 민간군사 산업의 핵심도시
구소련 및 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 이스라엘 •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파 • Levdan • Vinnel • SAIC • DynCo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 훈련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의 경우 많은 부분 민간기업에 의존
아시아 오세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 캄보디아 • 미얀마 • 필리핀 •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RI • 코프라스 • ABAS • 맨파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훈련, 조언 • 지뢰제거 • 대테러 활동 • 신병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병모집의 경우 장래 유망 사영화 사업
아메리카 대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롬비아 • 멕시코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ynCorp • KBR • MPRI • 베탱 • OA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릴라소탕 • 군사훈련 • 군수지원 •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군사훈련 시장에 250개 기업 활동

자료: 우제웅 외, 2006: 59.

(1) MPRI(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

군사자문 부문에서 가장 유명한 MPRI는 전직 고위 군 장교 8명이 1987년 창설한 회사로 1평당 장성수가 펜타곤보다 많은 곳으로도 소문나 있는 민간군사기업이다. 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장교의 절반 정도는 전투 경험이나 박사학위 둘 중 하나는 갖고 있다(켄 실버스타인, 정인환 역, 2007: 220). MPRI의 경우 세계적으로 150여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군사 전문가 약 12,500명에 대한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전문가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 MPRI사의 사업 영역은 군사교육훈련, 전문가 양성, 전략기획 계획 및 예산관련 업무지원, 워 게임 및 시뮬레이션, 군사훈련센터 설립·운영 및 지원, 창군 지원, 신형무기의 운용 기술 지원, 군수지원, 군사기지 운영, 교리개발,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지원활동, 대테러, 부대 방호 및 요인 경호 등의 거의 모든 군사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김광우, 2005: 208-209).

현재 MPRI가 법인 부문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된 지금 어떤 이들은 회사가 활동하는 환경과 관행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더욱 광범위한 고객을 대상으로 삼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도입하고 있다. 전문화된 군사적 능력의 필요성이 덜한 이 영역들에는 새로운 공보 분야와 새롭게 사영화된 법 집행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런 전환은 민간군사 기업인 MPRI의 '탈군대화(Civilianization)'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MPRI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한성욱, 2007: 72).

(2) KBR(Kellog, Brown & Root)

군사지원 용역 분야를 좌우하는 기업 중의 하나이고, 미군이 가는 곳이면 거의 함께 했던 것이다. KBR은 다른 부문의 기업들과 달리 군사 영역에 진입한 비군사 기업으로써 공급부문이나 컨설팅 부문의 비슷한 기업들보다 인력 규모와 총수익이 훨씬 크다. KBR은 연간 수익이 160억 달러에 100여개 국가에 10만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건설·에너지 회사인 Halliburton이라는 거대 지주회사의 일부이다. KBR이 군사용역 시장으로 결정적인 팽창을 하게 된 것은 1992년 미 육군의 군수분야 민간증원 프로그램(Logistics Civil Augmentation=LOGCAP)³⁾을 통해 해외 긴급 군사작전의 군수 부문 계획을 담당하는 계약을 따내고부터이다. 미국 군대가 최초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계획 입안을 사적 조직에 하청을 준 것이다. 또한 KBR은 고객층을 미국 이외의 나라들로 다변화하고 확대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회사는 이미 나토 국가들을 비롯한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들을 상대로 비슷한 군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고객 리스트는 미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에너지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UK Ministry of Defense, NASA, 각 주, 카운티, 학교 등으로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헬리버튼 그룹 전체 수익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성욱, 2007: 72-79).

3) 전 세계적인 우발 상황 발생 시 미군 전력지원을 목적으로 미 육군 주도의 임시적 임무수행을 위해 민간법인 조직의 자원사용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 「미 육군 규정 700-137」의 발행과 함께 1985년 12월 6일 수립되었다. 현재 LOGCAP 계약은 미국의 20여개 이상 기업과 체결되어 있고 Republic of Rwanda, Haitian, Saudi Arabia, Kosovo, Ecuador, Italy, The Southeast Europe, Bosnia, Korea, Kuwait, Panama, East Timor, Somalia 등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3) DynCorp

Halliburton은 1946년 설립되어 현재 치안유지, 군수지원, 군사기지 운영, 방호 및 경호 사업을 담당하는 DynCorp International Service와 항공기 정비와 각종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담당하는 DynCorp Field Technical Service의 두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DynCorp사는 콜롬비아 내전에 참가하여 지난 10년간 종업원 8명이 활동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ynCorp사는 환경정화나 정보기술 부문은 물론 비밀에 휩싸인 국가 안보관련 분야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한성욱, 2007: 81). Colombia에서는 마약퇴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코카인 재배 지역에 대한 항공기 전단 살포에서부터 원격지 레이더 기지로부터 마약밀매자 감시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부와 계약을 체결해 Afghanistan의 카르자이(Hamid Karzai)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이라크(Iraq) 재건 사업 가운데 경찰병력 훈련을 담당하기 위해 보안 요원과 전직 경찰 1,000명을 이라크에 파견했다. 향후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해도 신생 이라크 군대나 경찰을 훈련시키는 일에 큰 역할이 예상되는 기업이다(우제웅 외, 2006: 67).

2) 한국의 민간군사기업 운용실태

우리나라는 전쟁 당시 군수산업을 활용했거나 민간군사기업이 참여한 사례가 거의 없다. 1960년 베트남 전 당시 민간군사기업의 직원들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것과 유사한 업체들 상당부분이 베트남에서 활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한진상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군의 UN PKO 활동에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이 많은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라크 자이툰 부대 등 다국적군의 경우 UN이 아닌 우리나라 예산으로 파병활동을 하므로 부대 주둔지 공사를 비롯한 식품 및 부대 운영 유지에 필요한 물품 등은 민간기업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고, 2004년과 2005년도 자이툰 부대에 대해서는 국내 20개 업체로부터 식료품, 전기·통신공사, 건축자재, 민사작전 소요 물품 등을 담당하게 하였고, 현지 22개 업체로부터 각종 자재구매 및 시설공사 일부를 민사작전용 물품 구매 등으로 조달하였다(육군본부, 2005).

우리나라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최근에 제대 군인의 풍부한 군사경험을 활용하면서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기업인 (주)승진 MR&D(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⁴⁾와 국방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설립

된 한국군사문제연구원⁵⁾ 등이 민간군사기업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군의 경우 해외 파병시 일부 분야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국내외 민간기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UN PKO 활동에는 우리 주체적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평시 현재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무장업무를 포함한 군사기업이 아직까지 존재하지는 않는다. 민간군사기업이라고 정의된 기업도 아직까지 없다. 참고적으로 2005년 3월 KBR은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한국군 예비역 대령을 부사장으로 영입하여 미군기지 이전사업 종합관리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이다(우재웅 외, 2006: 82). 사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이고, 이들이 분쟁지역에서 사망할 경우 정치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많은 국민들은 전쟁터에서 돈을 번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에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민간군사기업의 쟁점

1) 민간군사기업의 규제법규 불분명

민간군사기업이 활동하는 업무범위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급식, 식기 세척, 청소 같은 잡역업무의 단계부터 헬리콥터, 탱크 같은 무기를 갖추고 적과 직접 대치할 정도의 단계까지 넓은 범위에 이르고 있다. 잡역 등의 업무는 국제법, 국내법 어느 쪽에서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제네비협약』 제47조에 “사설용병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민간군사기업의 직원들의 전투행위는 범죄이며 이를 고용한 국가는 국가범죄를 추궁 받게 된다. 그러나 이라크에는 2만 여명이 넘는 용병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민간군사기업 및 그 직원, 그리고 이와 계약한 국가가 범죄자나 국가범죄로 처벌된 예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업무가 용병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국제법상의 규정은 사실상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법으로는 이들을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못한다. 정부도 없고, 법령도 없는 곳으로 파견되는 것이 이들의 임무라고 Singer는 말하고 있다. 사실 군사기업은 군대업무를 대신하지만 사실상 군대 소속도 아니다. 즉 군대의 명령이나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다른

-
- 4) (주)승진 MR&D는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풍부한 군사경험을 활용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개발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상근 및 비상근 연구요원 및 개발요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군 관련 연구 용역사업과 작전 및 교육훈련 관리, 용역개발, Think Pool 지원사업, 신형장비 및 시스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5)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군사분야에 관한 제 분야를 연구·분석하여 국방정책 수립 및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예비역의 취업활동지원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국방·군사분야에 대한 연구조사와 현역 및 예비역을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창업, 사회적응 교육 등을 수행하는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방향으로 용병에 관한 국내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국내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2004년 3월 이라크 팔루자(Fallujah)에서 미국인 4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언론은 이들을 민간인이라 보도했고 미국은 즉시 보복공격으로 팔루자를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2004년 9월 이라크에서 미국의 민간군사기업 'Black Water USA' 직원들이 민간인을 무차별 사격해 현장에서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PMC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돈을 받고 병력을 제공하는 PMC는 철저히 비밀리에 거래되어 왔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민간인 살상 등 문제를 일으켜도 일반인들은 그 실상을 알기 어려웠다. 현재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수백 개 PMC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작게는 요인경호 업무에서 시작해 크게는 병력과 화기를 갖추고 전투에도 참여한다. 2004년 문제가 된 이라크 민간인 무차별 살인사건은 2004년 9월 16일 미국 대사관 직원이 탄 차량이 바그다드 서부 니수르 광장을 지나면서 발생했다. 미국 대사관 차량이 폭탄 공격을 받아 대사관 직원의 경호 업무를 맡고 있던 미국 PMC 'Black Water USA' 요원들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광장에 있던 민간인들을 무차별 사격하여 이라크 민간인 1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참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사건 다음 날인 2004년 9월 17일 'Black Water USA'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이 업체를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틀 뒤인 2004년 9월 19일 이라크 내무부의 압둘 카림 칼리프 대변인은 "'Black Water USA'의 면허 취소를 원치 않는다."며 꼬리를 내렸다. 미국에 의해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는 현 이라크 정부에 이번에도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하원 정부개혁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Black Water USA'는 2005년부터 이라크에서 195건의 총격사건에 연루됐고 이중 84%는 업체 직원이 먼저 발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PMC는 60여 업체 10만여 명에 이른다. 이는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 15만여 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로, 이 때문에 PMC가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실질적 세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용병과 마찬가지로 민간군사기업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국가의 「형법」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김광우, 2005: 218).

이를 위해 다양하고도 복잡한 용병에 대한 판단은 이들이 참가하는 분쟁지역의 상황과 이들의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의 판단 주체는 UN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형순, 2002: 89).

2) 정치적 책임의 악용과 규제의 어려움

PMC가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은 냉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군축이 이루어지면서 군 업무

능력이 떨어지게 됐고, 소규모 분쟁이 유행처럼 번진 반면 정부 기능의 아웃소싱 바람으로 군사업무를 PMC에 맡기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PMC가 정치 외교적 문제를 덜 일으키는 데다 의회와 여론의 감시를 받지 않아 국내에서의 정치적 부담도 적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어 각국 정부가 PMC 사업을 키우게 됐다는 얘기도 있다. 또한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득도 있다. 다시 말해 사설군사들을 분쟁지역에 파견해도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민간군사들은 사망, 부상, 납치를 당해도 정규군의 경우보다 덜 알려지게 되므로 정치적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의 문제점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PMC의 이윤추구와 공공이익 사이의 충돌이 생긴다. 민간기업의 이익은 국가기관이나 공공이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체니(Richard Bruce Cheney) 부통령이 회장으로 몸담았던 Halliburton은 이라크 용역과 관련,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거듭 받아왔다. 비판자들은 가솔린 값을 과다청구하거나 하지도 않은 용역을 한 것처럼 꾸며 타낸 금액이 18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한다(피터 W. 싱어, 유강은 역, 2005: 45).

둘째, PMC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는가를 국가기관이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군사적 행동의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이다. 요원을 채용하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결정이기 때문에 자질에 문제를 지닌 자들도 있기 마련이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은 고객(정부, 국제기구, NGO, 국제테러단체 등)과의 계약을 통하여 그들의 임무를 의무사항으로 인식한다. 고객이 민간군사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러한 계약서 밖에 없다. 그러나 민간군사기업은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지출될 경우 분쟁이 예상보다 치열하게 전개됨으로써 기업종업원들의 인명손실이 많이 발생할 경우와 기타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이 그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그들이 약속한 군사적 임무 수행을 포기할 수 있다. 민간군사기업의 갑작스런 철수는 정규 군사활동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한성욱, 2007: 106).

셋째, PMC의 사업이 사실상 한 국가의 정책적 행위인데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점과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는 문제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점이고 오늘날 민간군사기업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게 된 비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가로서는 전략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다지 인기가 없거나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분야는 민간군사기업에 용역을 맡기게 된다.

넷째, PMC는 군조직과 같은 엄격한 규율이나 감시, 강제와 같은 개념이 부족하다. 군사 작전에 함께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군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민간인 신분이다. 한 법률가는 “법적으로 말한다면(PMC 요원들은)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 안에 갇혀 있는 알카에다 포로들처럼 법률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하고 있다.

다섯째, PMC와 군 사이의 미묘한 관계이다. 군의 아웃소싱은 분명히 군에도 큰 이득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피터 W. 싱어, 유강은 역, 2005: 45).

일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용병회사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Executive Outcomes)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반정부군 혁명연합전선을 진압한 과정은 거의 학살에 가까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PMC가 수행하는 작전은 사상자 통계도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같은 PMC를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이유는 이들이 전장에서 사망하더라도 공식적인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2,000명 이상의 미군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당했다는 공식 통계가 나와 있지만, PMC 직원이 얼마나 희생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일반병사들의 근무기피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확산돼가고 있다(임은경, 2007: 190-191).

3) 자본주의 원리에 따른 병리현상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사설군사기업의 용병들은 목돈을 벌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돈을 벌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그들에게 과연 이들을 채용한 기업은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못하다.

민간군사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내기 위해 직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이라크 팔루자에서 피살된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가족은 “이들이 이동할 때 장갑차량도 없었고 최소탑승인원 규정도 어겼고, 후방저격수도 없었으며, 지도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파견지역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들이 명령을 불복종할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BS 스페셜, 2006. 3. 2 방송). 더욱 놀라운 사실 중의 하나는 이 사건 이후에도 관련업체는 계속해서 이라크 갈 사람을 찾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군사기업의 사상자 수는 2006년 3월로 미군이 2,300명 사망하였고, 16,653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매년 8차례씩 열리는 사설군사기업의 취업박람회 참가업체는 190여개 정도이며, 이들의 수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MPRI의 경우 미국의 9.11테러가 일어난 후 주가가 2배 이상 폭등했고, KBR은 300만 달러에서 시작한 기업이 현재 160억

달러의 성장을 거두었다. IPOA(사설군사기업연합회) 회장은 PMC의 전체수익이 200억불 정도 되는데 PWC를 포함한 회사가 전체의 95%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전쟁은 이들에게 있어 큰 사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연간 1조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가장 큰 고객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민간군사기업과 3,000개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욱 문제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안전과 보험문제이다. 2003년 36개의 회사들이 컨소시엄한 국제평화운영협회(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Association)는 콩고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 유엔(United Nations)을 돕고 있는데 IOPA는 용병들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Fredland, 2004: 206). 거의 모든 민간군사기업들은 직원 채용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민간군사기업이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나라를 위해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독재정부나 군벌주의 마약조직을 위해 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9·11테러 직전 알카에다를 위해 일하기도 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이 자칫 국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겠다.

4) 민간군사기업 직원들의 윤리적 문제

민간군사기업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민간군사기업을 자본주의 원리로만 보았을 때 민간군사기업의 직원들이 인권문제에 상당히 취약했다면 민간군사들의 범죄행위는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인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연합군(Coalition force)의 개입에 따른 이라크에서의 이러한 상업활동의 급증은 미디어의 관심을 급증시켰다. 팔루자(Fallujah)에 있는 'Black water USA'라는 미국회사 종업원의 암살과 아부그라이브(Abu Ghribu) 수용소의 수감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에 대한 CACI사(CACI International, Inc)와 타이탄사(Titan Coporation) 직원의 개입은 논리적인 지지, 군대와 경찰력의 훈련, 심문과 정보수집, 전략적인 장소의 보호, 보디가드 서비스, 전술적인 조언과 교전 지역에서의 직접 개입을 포함한 민간기업들에 의해 제공되었던 이전보다 광범위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게 되었다(Carbonnier, 2006: 408). 몇 해 전 미국의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는 전쟁포로들의 엽기적인 사진이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용병들이 포로들을 굶주리게 하고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전문적인 포로심문관들도 있겠지만 그 외 요리사나 트럭운전수들마저 심문관으로 일했다. 이에 대해 시정하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민간 군계약자와 미군

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포로들이 미국에 의한 학대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자 그에 관련된 군인들은 2개월 안에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지만 사설군사계약자들은 미 국방부에 의해 한 번도 기소당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라크 안에서 어떠한 법률로도 처벌 받지 않는다.

IV.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

1. 민간군사기업의 가능 업무 분야

민간경비 산업분야에서는 제대군인의 경험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군 관련업무와 연계하여 민영교도소 운영의 경비 및 교도행정 업무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업체 운영, 공인민간조사업무,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 국방정보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운용중인 각종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하여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사업과 각종 전투근무지원 분야와 훈련통제 및 평가, 훈련장 관리 및 운용, 훈련 지원 분야에 대해 민간군사기업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군사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운영규정 중 연구과제와 관련된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민간군사기업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질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의 각종 전문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공인민간조사원 양성교육, 경비지도사 양성교육, 특수경비원 교육, 경호요원교육 등)을 개발하여 관련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이성근, 2005b: 103-107).

아울러 국내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한 제대군인의 취업기회 확대 차원과 국제 분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 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제대군인이 주축이 되어 군사 프로그램을 경영할 수 있는 국내 민간군사기업의 창업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요한 전쟁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간 하청 계약을 보류해야 한다. 그리고 독점계약 관행은 독점의 위험과 정부 관료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야 하고, 서비스를 사영화한다고 해서 감독 권한까지 양도해서는 안 된다. 고객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전술, 작전, 전략 등 모든 수준에서 민간군사기업과 연계하여 군 장교들에게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우제웅 외, 2006: 90-91).

따라서 현재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수행업무와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서

활동 중인 용역업체의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한국적 여건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의 업무를 분류하면 <표 3>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표 3> 민간군사기업의 적용 가능 업무

구분	적용 가능 업무	비 고
연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정책 및 전략·전술연구 • 교범 및 교리연구 • 해외 군사자료 번역 • 군사 관련자료 정리 및 발간 • 군용역 연구과제 수행 • 전장 교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연구소와 연계한 연구활동
무기체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체계 기술동향 수집/관리 • 운영분석 및 샘플데이터 수집관리 • 무기체계/교보재 개발 • ILS업무개발 	
군사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 안보 정책방향 공개토론/세미나 •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술/운영개념 자문 	
교육훈련 지원 /관리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통제 및 관리 • 전투 모의 프로그램 개발 • 전투 모의 훈련통제/관리 • 훈련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통제/관리 전담회사 운영
해외파병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물자 제조/납품 • 급식자재 납품 • 위탁급식 운영 • 주둔지 시설공사 • 복지회관 휴양소 운영 • 정비/수송 근무 지원 • 재건/복구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업체와 연계한 체계 구축 운영
민간경비 산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호·경비업무 • 민영교도소 일부 분야 위탁운영 • 중요시설 경비 위탁운영 • 정보보호 프로그램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설계/설치 포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방산장비 수출 • 플랜트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수익 창출 측면에서 운영

자료: 이성근, 2005b: 104

2. 민간군사기업의 운영모델

국방개혁 2020 개혁안에는 이미 군 인력감축과 민간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것이 현재 시대적 추세이다. 국방개혁안은 첫째, 국방운영의 문민 기반 확대, 둘째, 현대전 양

상에 부합한 군 구조/전력체계 구축, 셋째,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전환, 넷째,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의 정착 등을 주요 가치로 지향하고 있다. 이들을 일관하는 키워드는 바로 ‘문민 중심의 마인드’와 ‘의식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즉 민과 군이 하나가 된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국방정책 결정 및 운영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국방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차두현, 2006: 23). 그렇기 때문에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하며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의 운영모델은 한반도의 국방환경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부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 재취업을 통한 자생적·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운영형태와 해외파병군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파병목적과 국익을 달성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운영형태가 바람직하다.

새로운 개념의 민간군사기업 모델은 국내와 해외 분쟁지역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PMCC(Private Military and Civilian Company)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승진 MR&D 대표이사 인터뷰 2007; 한성욱, 2007 재인용). PMCC는 분쟁지역에서 파병군을 지원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재건사업, 다국적 유통, 무역 사업 등을 통한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예비역 일자리 창출사업의 기능에 대한 국내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민간군사기업의 복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민간군사기업 스스로가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군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요창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이성근, 2005b: 105).

3. 민간군사기업의 정책적 지원 대책

민간군사기업과 관련된 정책은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우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역시도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자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Singer, 2003: 234).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군사기업 활용이 아주 초보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군내에서 활용계획인 민간군사기업에 대해서 현재 운용중인 대내·외 용역제도와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민간군사기업이 수행 가능한 분야인 훈련 통제와 평가, 훈련장 관리와 운용, 훈련지원 분야에 대해 군사 전문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학술 용역연구사업 관련 운영규정 중 연구과제와 관련된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민간군사기업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질과 신뢰도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경비업은 현재 운용중인 관련 법규를 잘 적용하면 법 개정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김두현, 2001: 318).

제도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적 민간군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업체나 유사 업체 중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대군인 재취업과 연계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창업자금이나 연구개발비 등 정부 자금 지원과 군 관련 사업에 대한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군사기업의 난립을 막고,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와 수준을 갖춘 기업에만 적용하는 허가제 내지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이 기업의 허가 및 등록조건에 제대군인 취업비율을 적정 수준 의무화하는 제도의 시행을 발전시켜야 한다(김두현, 2004: 25). 효율적인 민간군사기업 관리 및 통제를 위해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 취업 창출과 연계하여 민간군사기업의 사업관리 및 운용에 대한 지원 및 통제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신설 운용함으로써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이성근, 2005b: 106).

또한 보다 효율적인 민간군사기업 운용을 위해서는 민간군사기업 계약을 감독하는 인력 스스로가 사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 군 장교들에게 교육과 연수의 기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Singer, 2003: 237). 이를 통해 군대는 민영화와 관련된 제도적 전문성을 축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 작전의 성공적인 실행에서 이 기업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처럼 적절한 인원의 공적인 감시자들이 있어야만 한다.

V. 결 론

국제사회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성장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전 세계 분쟁지역들은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가 이러한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정세상 이러한 민간군사기업의 활동도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안타깝게도 몇 십년간은 국내·외의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민간군사기업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써 북쪽으로는 중국과 북한, 동쪽으로는 일본에 의한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지만 징병제로 인한 인원 감축과 국방비의 제약은 군·경의 인력과 장비 부족을 가져와 이를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국력의 신장으로 UN PKO활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

에서 우리 군은 독특한 안보환경으로 인한 국내에 축적된 군사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에 대한 인력 풀을 활용하여 민간군사기업의 미래 수요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고 전쟁터를 무대로 돈을 벌기에 '죽음의 기업', '용병회사' 등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런 시각은 미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이정훈, 2008: 18). 지금도 민간군사기업의 요원으로 분쟁지역에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 미국인들조차도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왜 미국에서는 군사기업이 번창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필요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MC는 과거 용병으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내고 매력적인 성장 산업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야 할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빨리 제대군인의 취업기회 확대 차원과 국제 분쟁, 그리고 국방 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제대군인이 주축이 되어 군사프로그램을 경영할 수 있는 국내 민간군사기업의 창업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과 우수한 군 인력자원과 경비, 경찰인력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군사기업 도입 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해외진출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간경비업무의 영역확대와 민간군사기업의 소요창출 측면에서 군이나 경찰의 훈련장 시설을 활용하여 민간경비요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군사기업이 갖고 있는 군사 분야의 경험을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영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이 가능하여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이성근, 2005b: 107). 민간군사기업을 단지 일자리 창출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민간경비분야의 한 축으로써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다.

하지만 민간군사기업이 국제법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고 이러한 문제가 당장 해결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더 많은 PMC가 생겨나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차차 PMC에 대한 국제적인 법이 생겨날 것이고, 한국에서도 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 및 적용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자본주의 원리에 따른 병리적 현상이나 민간군사기업 직원들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소요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투 참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 외 더 많은 진출분야를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고,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용수 외(2006). 『군 비전투분야 아웃소싱과 연계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지원 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 김광우(2005). “국제분쟁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70: 203-224.
- 김두현(2001). 『경호경비법』, 서울: 백산출판사.
- _____ (2004). “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7: 7-28.
- 김정현(2004). “제대군인 재취업을 위한 민간군사기업제도 도입방안 연구”. 『합참』 22: 191-202.
- 김종하(2005).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국방조직 발전방향”. 『세계적 국방개혁 추세와 한국의 선택』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국방대 안보문제연구』 84-117.
- 김형순(2002). “용병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문광권(2002). “민간군사기업의 현황과 발전 추세”. 『주간국방논단』 881: 1-9.
- 우제웅 외(2006). 『민간군사기업 활용실태조사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 우제웅·이혁수(2007). “민간군사기업의 성장과 활용방안”. 『주간국방논단』 1158: 1-7.
- 육군본부(2005). 『국회답변자료』.
- 이성근(2005a). “민간군사기업의 이론적 배경”. 『군사저널』 9: 201-112.
- _____ (2005b). “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 및 발전방안”. 『군사저널』 10: 101-107.
- _____ (2005c). “민간군사기업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이영호(2008). “한국군 해외파병활동의 회고와 전망”. 『군사연구』 125: 79-105.
- 이장욱(2007). “냉전의 종식과 약소국 안보: 약소국의 생존투쟁과 PMC”.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5: 310-502.
- 이정훈(2008). “전쟁터 ‘용병회사’ 한국에 상륙!”. 『주간동아』 625: 18-20.
- 임은경(2007). “돈만 주면 전쟁도 대신해 주는 회사 민간군사기업”. 『월간말』 11: 190-191.
- 차두현(2006).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개혁, 그리고 법제화”. 『국방개혁 2020(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국방위원회.
- 프랭크 존스(2007). “생과 사의 틈새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월간조선』 330: 348-373.
- 피터 W. 싱어(P. W. Singer), 유강은 역(2005). 『전쟁대행 주식회사』, 서울: 지식의 풍경.
- _____ (2005). “아웃소싱 민간군사기업(PMF) 문제 있어”. 『국방저널』 5: 44-47.
- 켄 실버스타인(Ken Silverstein), 정인환 역 (2007). 『전쟁을 팝니다』. 서울: 이후.
- 한성욱(2007). “민군 군사협력기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SBS 스페셜(2006. 3. 5). 『전쟁주식회사의 용병들』. 32회.
- Carbonnier, Gilles(2006). “Privatisation and outsourcing in wartime: the humanitarian challenges”, *Disasters*, 30(4): 402-416.

- Fredland, J. Eric.(2004). "Outsourcing Military Force: A Transactions Costperspective on the Role of Military Companies", *Defence and Peace Economics*, 15(3): 205-219.
- Holmqvist, Caroline(2005).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e Case for Regulation", *Paper*, No. 9.
- Singer, P. W.(2003). *Corporate Warriors: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 Cornell University Press.
- The Stationery Office(2002). *Private Military Companies: Option for Regulation*, London.

Abstract

A Study in Considering the Acceptanc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Choi, Eung-Ryul · Song, Hye-Jin · Oh, Sei-Youen

Since the Cold war,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reduced the number of their military personnel. However, it is also factual that regional conflicts have been incessantly occurring around the world. In turn, specific governmental policies are also needed in certain countries. Recently, a resolution growingly accepted in the advanced countries is the outsourcing of the resources and services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which benefits for governments to manage their military force efficaciously.

The utilization of private military force, however, may potentially generate ethical and practical issues because of the non-specified international codes to regulate private military companies, the political misuse of private personnel without concerning the loss of public military employees in danger zones, the safety of private personnel in the field, and the possibility of genocide.

Prior to accept a private military companies which may be adequate in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military, it is necessary to review previous cases of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to determine the plausible boundaries of the operation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with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s of the Korean military and private business. Finally, the systemic governmental support is requested in order to foster the business of private military.

Key Words : Private Military Companies(PMCs), Civil Military Co-operation, Military Outsourcing, Military Personnel, Private Security